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63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3월 31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시 전체 규제 조정을 총괄하고 규제개혁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,
규제 개혁 전담 조직 신설 등을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불편·불합리한 규제의 집중 발굴과 체계적인 관리·개선안 마련을
위하여 규제 개혁 전담 조직 신설 및 사무분장 명시
- (기획조정실) 규제 조정 및 개혁 총괄을 담당하는 「규제혁신기획관(3급)」을
신설하고, ‘규제 평가·개선 등 규제개혁’ 관련 사항을 사무분장으로 명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
- (2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
(정원의 규정), 별표2(시·도에 두는 보조·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 등)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해당없음
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해당없음
- (5) 평가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- (7)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협의 사항:
협의 완료

라. 기 타

- (1) 신·구조문대비표: 별도 첨부
- (2) 입법예고('25. 3. 13. ~ 3. 25.) 결과: 의견제출 없음

※ 작성자 :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심연수(☎ 2133-6729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경제실”을 “기획조정실 밑에 규제혁신기획관을, 경제실”로 한다.

제5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규제 발굴·평가·개선 등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설·본부·국의 설치) ①· ② (생 략) ③ <u>경제실</u> 밑에 경제일자리기획 관, 창조산업기획관을, 복지실 밑에 복지기획관, 돌봄·고독정 책관을, 교통실 밑에 교통기획 관, 교통운영관을, 재난안전실 밑에 도로기획관을 두고, 주택 실 밑에 주택정책관, 건축기획 관을 둔다.	제4조(설·본부·국의 설치) ①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기획조정실</u> 밑에 <u>규제혁신기 획관을, 경제실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5조(기획조정실) 기획조정실장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10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5조(기획조정실) ----- -----. 1. ~ 10. (현행과 같음) <u>11. 규제 발굴·평가·개선 등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</u>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비용추계서"란 서울특별시의회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·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·서울특별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**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**(이하 "**비용**"이라 한다)에 관하여 추계(이하 "**비용추계**"라 한다)한 자료를 말한다.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. 미첨부 사유

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기구 개편 및 소관 사무 조정 사항으로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으며, 본 기구 조정으로 인한 정원 변동 관련 비용 추계는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별도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함

4. 작성자

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심연수(☎ 2133-6729)